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2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 : 임이자·김성원·김태호

최수진 · 김위상 · 권영세

유용원 • 인요한 • 이상휘

조승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함.

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.

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,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'휴가 전체 기간'으로 확대하고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,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75조 등)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"을 "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을"로 한다.

제75조 각 호 외 부분 중 "배우자 출산휴가"를 "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"로 한다.

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"기간 중 최초 5일"을 "전체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경우에"를 "경우로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. 다만, 피보험자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로 한정한다.

제77조제1항 후단 중 "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"를 "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, 난임치료휴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제1항 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행 제5조(국고의 부담) ① 국가는 제5조(국고의 부담) ① ------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----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보 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야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-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 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18조에 따라 피 보험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74 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----- 배우자 출산휴가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른 난임치료휴가-----전후휴가 급여 등(이하 "출산 전후휴가 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 1. ·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제75조 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-----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

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 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.

- 1. (생략)
- 2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<u>기간 중 최초 5일</u>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<u>경</u>우에 한정한다.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제 급여등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 조,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

1. (현행과 같음)
2
전체 기간
<u>경우</u>
로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
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
기간 중 최초 2일. 다만, 피
보험자 사업장이 우선지원
대상기업에 속한 경우로 한
<u>정한다.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77조(준용) ①
·

급여"는 "출산전후휴가 급여 -----등"으로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아휴직"은 각각 "출산전후 <u>우자 출산휴가</u>"로 본다.

② (생략)

휴가, <u>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</u> <u>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</u> 산휴가, 난임치료휴가 -----② (현행과 같음)